

# 규칙 윤리(Ethics of Rules)와 덕 윤리(Ethics of Virtues)의 통합: 공인회계사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

황호찬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hhwang@unitel.co.kr)

.....

최근 들어 공인회계사의 비윤리행동이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신정제지, 영원통신, 한보철강,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등).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의 (비)윤리행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편이다. 본 논문은 윤리학에서 다루는 윤리이론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한 직업윤리규정을 검토하여 공인회계사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현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한 직업윤리규정의 문제점과 현행 징계 위주의 윤리정책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내재적 요인인 덕의 윤리 (정의, 용기, 진실성)를 개발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직업윤리규정은 대폭 수정되어야 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계속교육으로서의 윤리교육도 대폭 보완되어야 하고, 특히 대학교의 회계감사 과목 중 윤리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노력이 공인회계사 자체 내에서 스스로 수행되지 않을 때 공인회계사는 일반대중으로부터 신뢰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공인회계사제도에 대한 강한 회의로 이어질 것이다.

.....

##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로부터 쉽게 비판의 대상이 된다.

외국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타 전문 직종에 비해 공인회계사의 윤리수준에 대한 일반대중 (the public)의 인식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그러나 동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대중은 '실현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공인회계사들에게 기대하는 소위 '사회 기대간격' (public expectation gap) 현상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반대중의 기대현상 때문에 공인회계사는 그 업무수행에 있어 이상적(理想的)수준에 조금만 미치지 못하여도 사회

"... 직업윤리규정이나 자율감리의 운영에 있어서도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동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보다는 공인회계사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사회적인 여론에 부응할 수 없었다. 또한 직업윤리란 본질적으로 자율적인 실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 스스로가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규정한 직업윤리규정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회계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이 많이 실추되기도 하였다."<sup>2)</sup>

실제로 이러한 비판은 공인회계사들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회의로 이어졌으며, 결국 공인회계사

논문 접수일 : 97. 4      게재확정일 : 97. 10

본 논문은 세종대학교 대양학원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본 논문의 심사과 유용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두 심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1) Louis Harris and Associates의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은 공인회계사는 정직하고, 전문지식이 있으며,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며, 윤리의식측정에서 12개의 전문 직업 중 수위를 차지했다 (*Journal of Accountancy*, December, 1986).

2) 권태리, "직업윤리와 전문인" 공인회계사 (1995, p.79)

제도의 무용론으로까지 발전하였다.<sup>3)</sup> 우리 나라는 아직 공인회계사를 상대로 한 소송사건이 미미한 형편이나 관련 법규의 보완, 투자가 들의 공인회계사 직무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공인회계사 업무의 국제화 및 다양화, 국내외 공인회계사 상호간의 경쟁심화 등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이미 많은 윤리적 갈등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증권관리위원회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건수 (<표 4>참고)는 매년 최저 35건에서부터 최고 131건으로 평균 70건에 달하며 특히 신정제지, 영원통신, 홍양(주), 한국강관, 한보철강 등의 사건 및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 사건은 공인회계사제도 및 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강한 회의를 초래하였다.<sup>4)</sup>

그동안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원들의 윤리적 갈등해결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일반 정보 이용자들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공인회계사직업윤리규정' (이후 직업윤리규정)을 1961년에 제정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여 왔다. 이에 의해 공인회계사회는 지속적인 윤리교육과 윤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회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현 윤리교육 및 윤리규정은 많은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윤리교육이라는 특수성, 직업윤리규정 자체의 문제점, 직업윤리규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규칙 윤리 (Ethics of

Rules)의 접근방법에 기인할 수 있다. 특히 징계를 위주로 하는 현 체제로는 공인회계사의 윤리의식 제고라는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첫째, 한국 공인회계사들을 대상으로 윤리행위 및 윤리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윤리학 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규칙 윤리'와 '덕 윤리'를 설명한 다음, 마지막으로 두 이론의 통합을 시도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업무와 관련된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대부분 '규칙 윤리'에 근거한 현행 징계정책 및 직업윤리규정은 '덕 윤리'를 대폭 수용하는 차원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고 있는 현행 윤리교육 프로그램도 대폭 보완되어야 하고, 대학교의 회계감사 과목 중 윤리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 II. 징계위주의 현 직업윤리규정 운영체제상의 문제점

### 설문조사

공인회계사들의 윤리의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사무실을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9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분석

3) 1990년대 초반 미국의 최대 금융 사건인 S & L 사례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서만도 도산한 피감사회사 31개중 29개회사가 적정의견을 받았다 (US New & World Report, 1990.8.6). 또한 미국 전체 회계감사인원 상대로 한 소송건수는 1992년에는 1985년에 비해서 두 배에 가까운 약 4,000건이 계류 중이었으며 소송 액은 약 150억 달러에 달했다. 실제적으로 1991년도 중 미국의 6대 회계감사법인 (Big Six)이 소송사건의 해결을 위해 지불한 금액은 3억달러에 달한다 (Time, 1992.4.13). 그 외 회계감사인의 업무에 대한 비판으로는 AICPA (1986)를, 공인회계사제도의 무용론을 주장한 논문은 Hamilton W.F. and Callahan, W.D. (1988)를 참고하기 바란다.

4) 조선일보, 1996년 5월 15일자; 1997년 9월 20일자.

〈표 1〉 설문조사 응답자의 구성

공인회계사 실무경험 연수	0.5 - 5년	44명
	6 - 10	22
	11 - 15	18
	16 - 20	6
	21년 이상	<u>7</u>
	합 계	97명
평균 실무경험 연수		8.8년
업무분야	회계감사	96명
	경영자문	44
	세무조정	87
	기타업무	<u>57</u>
	합 계	284명 <sup>주)</sup>

주) 업무분야가 중복됨.

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이 특정가설의 검증에 있지 아니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윤리 정책에 대한 회원의 인식파악 및 윤리의식 제고 방안의 연구에 있음으로 설문조사는 무작위추출 방법이 아닌 편의적 방법을 채택하였다. 응답자의 솔직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설문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었으며 응답자의 구성은 〈표 1〉과 같다.

#### 공인회계사들의 윤리적 갈등과 그 내용

〈표 2〉는 설문지에 응답한 공인회계사들이 공인회계사 업무상 경험하고 있는 윤리 갈등 현상과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91.8%가 업무상 윤리문제로 인한 갈등을 경험했고, 이 중 8.2%는 '상당히 많은' 갈등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공인회계사들간의 극심한 경쟁이 그들의 윤리적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나타내고 있고, 윤리적 갈등의 내용도 재무제표의 변경, 감사의견의 변경, 세무보고서의 수정, 감사수수료의 협상, 독립성 위반 등 다양하였다.

#### 현행 징계위주 정책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공인회계사들은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인회계사회의 현 징계정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3〉에 의하면 현 징계정책이 비윤리적 행동을 억제하는 효과에 대해 '거의 없다'가 11.2%, '조금밖에 없다'가 29.6%를 차지해 총 응답자의 40.8%가 처벌위주의 현행제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징계 (Sanctions)와 비윤리적 행위와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wang & Schneider, 1996; Tittle, 1980:

〈표 2〉 공인회계사의 윤리적 갈등현황 및 내용

1. 회계업무 (예를 들어, 회계감사, 경영자문, 세무대행 등) 를 수행하는 중 윤리문제로 인한 갈등을 경험해 본 일이 있는가?

(단위: %)

전혀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상당히 있다	아주 많이 있다
8.2	60.2	22.4	8.2	0.0

2. 공인회계사 사이의 업무에 따른 경쟁이 공인회계사로서의 윤리성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단위: %)

거의 미치지 않는다	3.1
약간 미친다	5.1
반반이다	10.2
많이 미친다	53.1
아주 많이 미친다	26.5
무응답	2.0

3. 윤리문제의 갈등을 경험하였다면 주로 어느 경우인가 ?

(단위: %)

세무보고서의 변경요구	8.2
재무제표 변경요구	48.0
감사의견 변경요구	24.5
독립성 위반	2.0
감사수수료의 조정	15.3
기 타	8.2

주) 일부 중복된 경우가 있음

Grasmick & Green, 1980; Jackson & Jones, 1985; Jackson & Milliron, 1986). 즉, 비윤리적 행위의 적발 가능성이 높을수록, 또한 징계의 내용이 엄중할 수록 공인회계사들은 비

윤리적 행동을 억제한다. 그러나 징계정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징계의 근거가 분명해야 하고, 비윤리행위에 대한 적발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적

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된 해당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고, 보고된 사항은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내려질 때 가능하다 (Graber, 1979).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는 위의 요건이 대체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는, 첫째, 직업윤리규정의 미비성을 들 수 있다. <표 3>에 요약되어 있는 것처럼, 윤리규정이 윤리적 갈등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는 질문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16.3%, '조금밖에 도움이 안된다' 라고 답한 사람이 38.8%에 달하여 전체 응답자의 55.1%

가 직업윤리규정의 기능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와 같이 직업윤리규정이 윤리문제에 관련된 갈등 해결을 위한 지침으로 적절치 못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먼저, 현 직업윤리규정상의 일부 용어들이 추상적이며 일부 개념들은 누락되어 있어 회원들이 윤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을 할 때에 직업윤리규정을 적절히 활용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 직업윤리규정의 「윤리강령」에서 공인회계사는 “독립·성실·정직”의 정신을 견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성실, 정직 등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다.

<표 3> 징계정책에 관한 평가

1.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공인회계사회, 증권감독원 및 재경원의 징계조치는 공인회계사의 윤리행위를 제고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단위: %)

효과가 거의 없다	효과가 조금밖에 없다	반반이다	효과가 많이 있다	효과가 대단히 많이 있다	무응답
11.2	29.6	21.4	34.7	1.0	2.0

2. 공인회계사의 현 직업윤리규정은 갈등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

(단위: %)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금밖에 도움이 안된다	반반이다	상당한 도움이 된다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된다	무응답
16.3	38.8	23.5	15.3	1.0	2.0

3.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윤리위원회, 감리위원회, 증권감독원, 재경원 등으로부터 적발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단위: %)

거의 없다	조금밖에 없다	반반이다	많이 있다	대단히 많이 있다	무응답
3.1	40.8	31.6	20.4	2.0	2.0

다만 「회계감사준칙」 213의 「인격」 조항에서 감사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인격과 품성의 도야, 건전한 윤리의식의 고취, 정직성 및 성실성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건전한 윤리의식' '정직성' 및 '성실성' 등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지가 않다.<sup>5)</sup> 또한 '객관성'이라는 개념도 직업윤리규정에는 그 설명이 누락되어 있다.<sup>6)</sup> 결국 이러한 규정의 추상성 및 미비는 회원들이 윤리문제에 직면했을 때 직업윤리규정을 참고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직업윤리규정에 대한 무지(無知)로 나타날 수 있어 잘못된 의사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 (Davis, 1984).

또한, 현행 직업윤리규정의 체계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최근 개정된 직업윤리규정 (1997)은 총칙, 일반적 윤리, 직무에 관한 윤리, 윤리 위원회 등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중 제 2장인 '일반적 윤리'와 제 3장인 '직무에 관한 윤리'의 구분이 그 목적 및 기준에 있어 모호하다. 예를 들어, 일반적 윤리로 분류된 제 9조 (광고)는 직무

에 관한 윤리로, 이에 비해 직무에 관한 윤리로 분류된 제 18조 (부당경쟁의 금지)는 일반적 윤리로 분류될 수도 있다. 회원들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분류 방법보다는 오히려 공인회계사로서 추구해야 할 이상(理想)으로서의 윤리행동에 관한 원칙들과, 이를 좀더 구체화하여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는 강제규정으로의 구분이 보다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현 직업윤리규정 (회계감사기준 및 회계감사준칙 포함)은 '규칙 윤리'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 (예를 들어, 규정 상호간의 상충)이 내포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제 III 장에서 다룬다.

둘째, 징계정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비윤리행위에 대한 적발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참고로 과거 6년간 징계기관에 의한 징계건수는 다음 <표 4>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표 3>에 요약

<표 4> 과거 6년간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현황

구 분	공인회계사 윤리위원회 징계				증권관리위원회 징계			재경원 징계	
	권리정지	경고	견책	소계	주의	경고	소계	직무정지	소계
91.4.1-92.3.31	1	24	5	30	75	56	131	3	3
92.4.1-93.3.31	1	8	6	15	21	14	35	10	10
93.4.1-94.3.31	3	26	12	41	42	26	68	10	10
94.4.1-95.3.31	2	10	4	16	38	23	61	6	6
95.4.1-96.3.31	9	10	17	36	51	20	71	-	-
96.4.1-97.3.31	3	12	4	19	28	23	51	3	3

주) 1997년도 개정회칙 및 관련법규에 의하면 징계조치의 내용 및 종류에 변경이 있음

자료: 한국 공인회계사회

5) 「회계감사기준」 제8조에서 '신의성실'을 '정당한 주의의무', '책임과 의무의 충실한 이행' 및 '비밀유지의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것이 직업윤리규정상의 윤리강령에 언급되어 있는 '성실'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회계감사기준에서 언급하는 '신의 성실'은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본 논문의 III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6) 자세한 내용은 III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된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비윤리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윤리위원회, 증권감독원 등으로부터 비윤리행위에 대한 적발가능성 대해 '거의 없다'가 3.1%, '조금밖에 없다'가 40.8%로 약 43.9%가 적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 적발에 의한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의 예방효과가 의문시된다.

셋째, 징계위주의 운영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적발된 사항이 해당 위원회에 적절히 보고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징계조치가 필요하다. 1997년도에 개정된 직업윤리규정, 관련법규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에 의하면 공인회계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은 재정경제원, 증권감독원, 윤리위원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회계감사심의위원회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었으며 기존 공인회계사회의 윤리위원회 업무는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로 분리되어 이관되었다. 이와 같은 기구변경의 특기사항 중 하나는 신설 윤리위원회의 구성이 공인회계사회 회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원의 공무원, 증권감독원 심의위원보, 윤리조사심의위원회 및 회계감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대학교수 및 변호사 등으로 되어있어 다양한 계층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만일 재정원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신설 윤리위원회가 윤리조사심의위원회 및 회계감사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추진하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윤리위원회는 그 구성내용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형식적 기구일 개연성이 존재한다. 개정된 법규 및 회칙의 또 다른 특징은 증권감독원의 주관아래 실시되는 주의, 경고 등의 징계조치 외에, 등록취소, 설립인가의 취소, 2년이하의 직무정지, 1년이하의 직무정지, 견책, 2년이하의 권리정지, 경고, 주의처분 등 징계의 유형이 매우

세분화된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징계유형이 세분화된데에 따르는 실질적인 효과는 의문시되며, 특히 징계내용이 복잡해지면서 실무적으로 각 징계의 정도를 판단하기위해 필요한 양형의 객관화 작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징계의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이 그 투명성을 상실하게 되면 정실이 개입될 여지가 발생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징계제도의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리조사심의위원회 및 회계감사심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에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비록 위원들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공인회계사 회원 중에서 위원을 선출하는 한 완전한 객관적 업무처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주석 2 참조).

종합하건대 현 공인회계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직업윤리규정에 의한 징계위주의 정책은 기대한 수준만큼의 효과가 의문시된다. 그것은 윤리규정의 미비, 비윤리행위에 대한 낮은 적발 가능성, 적발된 사항에 대한 처벌의 부적절성, 그리고 윤리관련 위원회의 독립성 미확보 등 때문이다.

### III. 규칙 윤리와 덕 윤리

윤리이론을 크게 분류하면 규칙의 윤리와 덕의 윤리로 나눌 수 있다. 규칙의 윤리는 옳고 그른 것을 기준으로 도덕적 의무의 판단을 다루는 반면 덕의 윤리는 선과 악에 초점을 두어 도덕적 가치판단에 기초를 둔다. 이를 요약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규칙의 윤리와 덕의 윤리

구 분	규칙의 윤리 (Ethics of Rules)		덕의 윤리 (Ethics of Virtue)	
주 제	· 도덕적 의무의 판단 (Judgments of moral obligation) · 무엇을 해야 하는가? (right, wrong)		· 도덕적 가치의 판단 (Judgements of moral value) ·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good, bad)	
접근방법	· 원리적 (의무론) 접근 (Deontology) · 원칙에 중점	· 결과적 (목적론) 접근 (Teleology) · 결과에 중점	· 원리적 접근 (Deontology) · 덕 자체	· 결과론적 접근 (Teleology) · 타인을 고려
원 칙	권리, 의무, 정의	공리주의	자 연	정의, 용기, 성실
대표적 학자	칸트, 로스, 롤스	벤담, 밀	스토아 학파	아리스토텔레스, 맥킨타이어

### 규칙 윤리 (Ethics of Rules)

규칙의 윤리는 도덕적 의무에 초점이 있다.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규칙의 윤리를 좀더 세분하면 의무론적 접근과 목적론적 접근으로 나눌 수 있다. 의무론적 접근에 의하면 옳고 그른 판단의 기준이 행위 자체에 있지 행위로 인한 결과에 있지 않다. 즉, “특정한 상황에서는 결과와 상관없이 특정한 행위가 항상 옳은 것이다” (Broad, 1951). 예를 들어 칸트의 ‘정언 명령’ (Categorical imperative)에 의하면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 취급되어야지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되며 이 명령에 따른 행동은 비록 가장 큰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옳다 (Frankena, 1961). 이에 비해 목적론적인 접근법은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위의 결과에 더 초점을 둔다. 공리주의 (Utilitarianism)는 목적론적인 접근법에 의한 윤리기준으로 이에 의하면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 행위의 결과가 최대의 선 (혹은 행복)

을 가져다주는 것이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옳다고 주장한다 (Beauchamp & Bowie, 1988). 공리주의 중에서도 규칙-공리주의 (Rule-Utilitarianism)는 규칙 자체에 중심을 둔다. 규칙-공리주의에 의하면 ‘어떤 행위’가 효용을 극대화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이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규칙인가에 더 중점이 있다. 이 경우 모든 사람이 그 규칙을 따르게 되면 최대의 효용을 창출할 것이다 (Velasquez, 1988). 예를 들어, 규칙-공리주의에 의하면 공인회계사는 어떤 특정 행위에 대한 판단보다는 어떤 직업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느냐에 따라 윤리적 의무의 판단이 달라진다. 이러한 주장이 가능한 것은 모두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조직전체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비록 단기적으로는 윤리규정을 어기는 것이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 같으나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규정을 지키는 것이 조직 전체뿐 아니라 개인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공동선 (common good)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윤리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Harsanyi, 1985).

### 규칙 윤리 (특히 규칙-공리주의)의 한계

규칙을 지키면 최대의 공리를 가져다준다는 규칙-공리주의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직업윤리규정도 규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윤리적 관점에서 각 규정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면 그 전 단계로 각 대안을 비교하기 위한 효용성의 계량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효용성을 정확히 측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문제점은 조항간 상호 대립되는 경우에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직업윤리규정 제 3조 3항에 의하면 “회원은 위촉인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회계감사기준」 제8조 2항에서도 “감사인은 업무상 지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비밀유지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기준」 제221조 3항에 의하면 “감사인은 경영자와 외부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상충하는 사항의 감사에 있어서는 외부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외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우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두 원칙의 상충이 발생한다. 즉, 고객의 비밀보장 원칙과 외부이해관계자 우선원칙이 상충되고 있는 것이다.<sup>7)</sup> 이런 경우 어느 원칙이 공인회계사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효용성을 계량화하여 비교해야 할 것이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 규칙-공리주의는 그 중심이 규칙의 준수에 있으므로 조직의 구성원이 규칙을 준수하는 한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규칙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직업윤리규정이 회원의 이해득실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면 일반 대중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윤리규정의 일관성 유지’라는 원칙이 희생되어야 한다. 1980년대 말 미국에서는 공인회계사의 광고나 일부 성공보수 등을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직업윤리규정을 수정하였다. 개정 전에는 광고나 성공보수 등의 행위는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을 해치고 고객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의 능력을 오판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된 행위였다. 우리 나라도 직업윤리규정 제 9조에 의하면 “회원은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실추하게 하거나 과대하게 선전하는 방법 또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실추하는 방법이나 내용이 아닌 한 광고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품위를 실추하는 행위인지 혹은 어느 정도가 과대하게 선전하는 방법 또는 내용인지 이를 규정하기도 어렵지만 광고를 함으로써 과연 공인회계사들의 효용이 증대되었는지—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측정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더욱이 직업윤리규정이 공인회계사의 이해득실에 따라 자의적으로 변경됨으로 일반대중의 신뢰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변경의 타당성을 평가하기는 더욱 어렵다.

셋째, 직업윤리규정을 아무리 잘 정비하여도 모든 경계 및 윤리행위를 열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직업윤리규정 제 102조 Integrity and

7) 미국 법원의 사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다. Fund of Funds 사례에서는 비밀을 유지한 공인회계사 입장보다는 회사의 기밀을 외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인회계사에게 패소 판결을, Consolidata Services의 사례에서는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공시했다는 명목으로 다시 공인회계사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Objectivity에 의하면 “전문적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공인회계사회 회원은 객관성과 성실성을 견지해야 하고, 이해상충에 공정해야 하며, 잘못된 것 인지를 알면서도 고의로 사실을 잘못 표현해서는 안되며 (shall not knowingly misrepresent facts)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판단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의로 잘못 표현한다”는 의미는 만약 어떤 조직의 재무제표나 기록에 “거짓되고 오도되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기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시키거나 허용하는” 사람은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규정의 맹점은 Gaa & Smith (1985)가 지적한대로 비록 “잘못된 것은 알고 있으나 지적하는 것을 생략”하든지 혹은 “잘못된 것을 모르는 채 사실을 잘못 표현”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다. 즉, 적극적 의미에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잘못 표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누락시키는 소극적 행위와 잘못된 것인 줄 모른 채 처리하는 무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sup>8)</sup>

넷째, 단순히 규칙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규칙을 지키는 것에 불과하지 공인회계사 본연의 윤리적 행동을 보장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규칙의 준수만을 강조하게 되면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행동은 전부 윤리적이다” 이라는 주장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직업윤리규정 제 17조는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면 독립성을 지킨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것은 직업윤리규정 제 17조를 지킨 것 뿐이지 회계감사인이 독립적이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직업윤리규정 제 3조 2항에서 회원은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계감사준칙 제 221조 1항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감사인은 감사와 관련된 사적 이해를 배제하여야 하며, 감사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항상 공정불편의 자세를 견지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정신적 독립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신적 독립성을 객관화하기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외관상의 독립성 요건만 충족되면 독립성이 확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실정이라서 정신적 독립성은 형식적 조항에 불과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회계원칙의 준수라는 측면도 동일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회계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이 피감사인에게는 유리하나 외부이해관계자에게는 불리할 것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기존의 원칙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혹은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지 않는 한) 공인회계사의 본연의 정신 (즉, 공공이익 우선 원칙)과 위배가 되어도 기존의 불합리한 원칙이 채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9)</sup>

### 덕 윤리 (Ethics of Virtue)

규칙의 윤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what are we to do)의 의무에 초점이 있다면 덕의 윤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what are we to

8) 최근 개정된 우리나라 직업윤리규정 제 3조 3항은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로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로 서술되어 있어 미국 직업윤리규정의 잘못된 점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사무직원 혹은 보조원에게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은 여전히 누락되어 있다.

9) 미국의 Federal Home Loan Bank Board는 1986년 단자회사 (S&L)들이 그들이 보유한 담보자산을 장부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각할 경우 그 손실을 자산으로 기록하고 차후 몇 년에 걸쳐 상각처리하는 회계원칙을 제안했는데 이때 단자회사의 회계감사인들은 이 제안을 지지하였다. 그 이유는 현행 회계원칙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외부이해관계자보다 고객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Wyatt, 1989).

be)의 가치판단에 초점이 있다. 만일 규칙을 단지 의무감에서 지킨다면 그것은 규칙을 지켰다는 사실 이외에 행위의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가는 설명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덕이란 행위의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한다. 이러한 덕은 한 두번 옳은 일을 한 것에 의해 형성되었다기 보다는 오랫동안 규칙적으로 반복함으로 '습관화'된 개인의 인격적 특성을 의미한다 (사하키안, 1986).

덕의 윤리는 멀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최근에는 윤리학에서는 MacIntyre (1984)와 Trianosky (1990), 경영학에서는 Solomon (1993), 회계학에서는 Francis (1990) 등에 의해서 주창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덕은 칭찬할 만한 인간의 속성으로 덕을 행사하는 그 자체가 인간의 eudamonia (복지 혹은 행복)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고 했다 (Taylor, 1955). 덕의 윤리는 최근 MacIntyre (1984)에 의해서 다시 학계에 관심을 끌기 시작했는데 그에 의하면 "덕이란 습득된 인간의 질적 특성 (acquired human quality)으로 인간은 이를 소유하고 행사하므로 practice에 내재된 선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MacIntyre가 주장하는 덕이란 인간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 개발되고 습득된 인간의 질적 특성이라는 점과, 이러한 덕이 실제적으로 practice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여기서 MacIntyre가 뜻하는 practice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에 의하면 practice란 "사회적으로 정립되고 협조에 의해 이루어진 인간행위"이며 인간은 이 practice를 통하여 탁월성을 추구하므로 선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회계감사는 practice인가?

회계감사는 practice인가의 질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만일 회계감사가 MacIntyre가 정의하는 practice의 범주에 속하지 못한다면 현재 공인회계사가 전문직업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목적들이 재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회계감사는 사회적으로 정립되었다는 점, 상호협조에 의해 업무가 수행된다는 점, 그리고 탁월성을 추구하는 정신(회계감사기준 제6조)에 비추어 보면 MacIntyre가 의미하는 practice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 집단 (예를 들어, 의사나 변호사)과는 달리 회계감사인인 둘러싼 특수한 환경은 단순히 회계감사를 practice로 간주하기에는 주의를 요한다. 그것은 공인회계사의 고객에 대한 이해부족과,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이성 때문이다.

회계감사인의 진정한 고객은 누구인가? 만약 계약 당사자를 고객으로 간주한다면 감사수수료를 지급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한 피감사인이 고객일 것이다. 그러나 감사인에게는 비록 직접적인 계약당사자는 아니지만 일반 정보이용자 (the public)라는 제 3의 계약당사자가 있으며 이들의 권리가 오히려 피감사인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일반 정보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완수할 때 비로소 계약 당사자 (피감사인)의 이익도 가장 잘 충족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 직업윤리규정 제 53.02조). 그러므로 만약 감사인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도 회계감사인의 진정한 고객이 누구인가에 대한 일치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계감사는 사회적으로 아직 정립되었다 할 수 없음으로 practice라 할 수 없다.

회계감사의 또 다른 특징은 의사나 변호사들의

고객은 전문가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요구하나 공인 회계사의 고객인 피감사인은 최상의 품질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sup>10)</sup> 감사인의 변경, 감사의견 쇼핑 (opinion shopping), 그 외 회계감사의 수요 등에 관한 문헌들 (Knapp, 1985; DeAngelo, 1981; Francis, 1984; Chow, 1982)은 감사인 들이 최상의 감사서비스를 포기할 수도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인회계사의 업무에 따른 특성에도 불구하고 외부회계감사제도가 생성된 역사적 배경과 그 목적에 비추어볼때 회계감사는 일반적으로 MacIntyre가 정의하는 practice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회계감사는 목적, 의사결정과정, 업무의 수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규칙 제정 및 실무를 통해 감사인 사이의 합일을 도출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공인회계사제도 (특히 회계감사 분야)에 대한 일정수준의 규범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감사가 이와 같은 practice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감사인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을 견지해야 한다.

첫째, 회계감사인은 그 업무수행에서 탁월성을 견지해야 한다. 여기서 논의하는 탁월성이란 회계학, 회계감사, 상법, 세법 등 감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회계감사준칙 제 211조)을 구비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MacIntyre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하는 탁월성이란 전문화된 기술이나 지식 이상의 것으로 자기 자신의 사상, 감정, 행동으로 표현된, 다른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범적인 방법이다 (Solomon, 1993: p.192). 따라서 공인회계사들

이 회계감사와 연관하여 추구하는 탁월성이란 단순히 추상적인 원칙의 나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회계감사 업무 자체를 규정하는 준거의 틀 (frame of reference)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은 근본적으로 타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모든 회원의 동의에 의해 생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practice를 통해 탁월성을 견지하는 감사인은 외적 보상보다는 내적 보상을 추구해야 한다. 공인회계사들이 사회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는 주 원인은 공인회계사들이 독립성, 정직성, 정의의 실현 등의 내적 보상을 추구하기보다는 명예, 사회적 지위, 권력, 경제적 이익, 승진 등 외적보상을 추구하는데 있다. 「회계감사준칙」은 감사인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격과 품성을 갖추어야 하며 건전한 윤리의식, 정직성 및 성실성을 견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외적 보상보다는 내적 보상을 그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 213조). 그러나 감사인이 이와 같은 내적 보상을 추구하고자 해도 practice는 근본적으로 외적보상을 추구하는 기관 (institution)<sup>11)</sup>에 의해 부패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그것은 기관 혹은 조직은 구성원의 내적 선이나 practice를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체의 세력이나 부의 재생산에 더욱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sup>12)</sup> 따라서 회계감사가 기관화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패를 방지하고 practice 로의 위상을 유지할 위해서,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공인회계사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의 덕을 끊임없이 계발하고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은 '정의', '용기', 그리고 '진실성'이다.

10) 생사가 달린 질병을 앞에 두고 의사에게 최상의 치료를 요구하지 않는 환자는 없을 것이다.

11) MacIntyre에 의하면 체스, 물리학, 의학 등은 practice인 반면, 체스클럽, 연구소, 대학교, 병원 등은 institutor.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institution은 그 특성상 외적보상을 추구하게 된다.

12) D. P. McCann & M.L. Brownsberger (1990).

감사인에게 필요한 세 가지 덕목: 정의, 용기, 진실성

### 정의

정의(正義)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자기 몫을 정당하게 갖는 것'으로 정의된다.<sup>13)</sup> 정의의 덕이 감사인에게 특별히 필요한 이유는 회계정보의 생산과정에서 차지하는 감사인의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 때문이다. 감사인의 주된 임무는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interest)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계정보는 정부, 지역사회, 경영자, 종업원, 소비자,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이용되는 공공적 성격의 정보이므로 이들 이해관계자 각자가 자기의 몫을 정당하게 확보하여 공동선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 회계감사의 궁극적 목적이다. 회계감사에 관련된 갈등 및 부정은 감사인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연루되어 공동선 달성에 실패할 때 발생된다. 이러한 정의의 덕, 즉 공정불편의 자세를 견지하고 이해갈등에 연루되지 않는 상태는 객관성의 유지라는 원칙으로 구체화된다.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준칙에는 객관성을 독립된 개념으로 정의하지 않고 정신적 독립성(제 221조) 항목에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객관성과 독립성은 별개의 독립된 개념이다. 독립성의 유지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독립성이 유지되었다고 해서 객관성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한편, 이러한 정의의 덕이 회계자료는 '가치 중립

적(value-free)'이라는 실증주의(positivism)의 주장에 의해서 회석되어서는 안된다.<sup>14)</sup> 근본적으로 회계자료는 가치 중립적이라기 보다는 의사결정자의 선호가 반영된 가치 내재적(value-laden)이다. 예를 들어, 회계원칙의 변경, 이익 유연화, 정보의 비밀유지, 수익과 비용의 대응, 자본화 및 비용화 등의 회계실무에는 이미 정보 생산자의 가치나 규범이 내재되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회계자료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어 회계정보에 내재된 가치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외부 이용자는 감사인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감사인이 정의의 덕을 유지하는 것 즉, 감사수행의 전 과정상에 공정불편의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로서의 중대한 사명이다.

### 용기

정의의 덕이 공동선의 달성을 위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용기의 덕은 고객의 부당한 요구, 동료 회계사의 부당한 압력, 소속 회계법인의 부당한 정책 등 불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다. 이러한 덕을 견지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는 필요에 따라서는 양심선언(whistle blowing)도 해야 할 것이며 그럴 경우 개인적으로 커다란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공인회계사들이 이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용기의 덕을 포기한다면 일반대중은 경제정의의 실현을 위해 결국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Hamilton & Callahan, 1988). 불행하

13) 정의(Justice)는 여러 가지 뜻으로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배의 공평성에 초점을 둔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교정적 혹은 보상적 정의(Retributive Justice) 등 여러 정의가 있는데 보다 자세한 논의는 Cavanagh (1981), Velasquez (1988)을 참고하라. 본 논문에서는 공평성 혹은 객관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14) 실증주의는 '자료자체가 사실을 말하게 해야한다'는 과학철학으로 이론체계로서는 이미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Christensen, 1983; Arrington & Francis, 1988; 차머스, 1985).

〈표 6〉 현행 윤리교육의 적절성

현재 공인회계사회의 윤리교육은 교육시간 및 내용에서 적절한가?		(단위: %)
아주 부적절하다		2.0
부적절하다		32.7
반반이다		34.7
적절하다		23.5
아주 적절하다		3.1
무응답		7.2

제도 현행 직업윤리규정이나 회계감사기준에는 용기의 덕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곳이 없다. 불의에 항거하는 공인회계사들의 자구적인 노력 없이는 일반대중으로부터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은 요원하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나 MacIntyre가 의미하는 '용기'는 잘 훈련된 군인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덕목이다. 용감한 군인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용기가 있어서라기보다 평소에 잘 훈련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에서 용감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공인회계사가 그의 업무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려면 올바른 곳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잘 훈련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MacIntyre, 1984, p.149-150). 그러나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를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를 통해서 선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표 6〉에 요약된 설문서 결과에 의하면 현행 윤리 교육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 진실성

진실성은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정보 혹은 감사보고서가 얼마나 기업의 실체를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느냐와 관련된 덕목이다 (Mautz & Sharaf, 1961). 이런 의미에서 감사보고서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fairly presented)'라는 표현은 단순히 감사보고서의 끝을 장식하는 상투적 문구가 아니라 회계정보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결론에 해당한다. 특히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문구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는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의 경제실체에 대해 발행한 보증서로 인식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보이용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감사인은 감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 이외에도, 감사업무로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당한 주의를 다해야 한다 (회계감사기준 제6조 및 제8조). 감사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은 회계원칙 및 감사기준의 적절한 적용, 컴퓨터 지식 및 통계적 기법 등의 활용능력 뿐 아니라 이해집단간의 갈등 조정, 회사와의 대화 및 설득 등의 비회계적 능력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진실성의 덕이 중요한 이유는 만일 기업실체에 대한 진실성이 감사보고서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나라의 경제적

어려움을 회계정보의 조작을 통하여 보상하려고 하는 시도들, 예를 들어 타당성이 결여된 회계원칙의 잦은 변경이나 이미 결정된 회계원칙의 적용을 유보하는 것 등은 기업의 진실성을 시험하고자 하는 공인회계사제도의 기본정신에 대치되는 것임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진실성의 또 다른 측면은 정직성에 관련된 것이다. 감사인이 고객과의 정직성(신의)을 유지해야 함은 회계정보의 진실된 공시를 위해서는 고객회사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즉, 감사인과의 신의가 위배되면(예를 들어, 회사의 기밀이 고객회사의 허락 없이 유출되는 행위) 고객으로부터 더 이상 진실된 정보제공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고객과의 신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상충될 때에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개인의 이득이나 이권에 관계없이 수행되어야 한다(미국 직업윤리규정 제 54조).

현행 우리 나라의 직업윤리규정 및 회계감사 기준에는 진실성의 덕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단지 회계감사기준 제 6조 「감사인의 적격성」에서 감사인의 인격을, 제 8조 「신의 성실」에서는 감사인의 정당한 주의의무와 기밀보장을 다루고 있으나 감사 보고서가 기업실체를 얼마나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회계감사 본연의 기능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IV.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규칙 윤리와 덕 윤리의 통합방안

규칙 윤리와 덕 윤리는 상호 배타적이라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이다(Cavanagh et al. 1981;

Hund & Vitell, 1986; Frankena, 1963). 그것은 한편으로는 규칙 윤리만으로 회계감사와 관련된 모든 윤리행위를 규정화할 수 없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덕의 윤리만으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규칙 윤리와 덕 윤리를 통합하여 윤리의식 제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규칙 윤리의 관점에서 제안한다면 첫째, II장에서 논의된바와 같이 현행 직업윤리규정은 공인회계사들이 당면한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일부 추상적인 용어(예를 들어, 정직, 성실)를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으며 '객관성' 등 일부 누락된 개념도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공인회계사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의 임의 규정과 규정위반시 처벌할 근거가 될 매우 구체적인 강제규정과 구분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체제의 정비를 통해 회원들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면 현행 직업윤리규정은 공인회계사들의 윤리행동에 관한 실질적인 준거의 틀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회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 및 신입 회원들의 직업윤리규정, 공인회계사회회칙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연구(Hwang & Schneider, 1996)에 의하면 규정 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윤리행동 사이에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신입 회원의 경우, 비록 공인회계사의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전에 윤리과목에 대한 별도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자에 한해서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인증하도록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존 회원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

한 후 정기적으로 윤리에 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윤리와 관련된 사항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현행 징계제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징계의 적발건수나 징계의 내용 면에서 실질적으로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억제하여 외부로부터의 비판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상향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인회계사회 내에 윤리문제만을 전담할 수 있는 상근직을 두어 심의건수를 대폭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며, 이들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현행 징계기구가 다원화되어 있고 징계유형이 너무 세분화됨으로 인해 발생될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징계기간의 권한 및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업무의 중복을 피해야 하며, 징계 유형의 수를 줄이고 대신 징계 유형간의 차이를 분명히 하여 각 징계에 대한 양형의 객관화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양형의 기준도 재검토되어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직업윤리규정을 보완하고 징계제도를 강화하여도 규칙 윤리에 근거한 정책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은 이미 논의 되었다. 결국 회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칙 윤리가 보완되어야 할 뿐 아니라 덕의 윤리가 대폭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공인회계사회는 덕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계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직업윤리규정을 다시 개정한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공인회계사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독립성의 위반, 감사의견 쇼팽, 감사수

수로 경쟁, 각종 회계정보의 왜곡 등 비윤리적 행위가 덕의 윤리 기준에 의하면 용납될 수 없을 경우에도 직업윤리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대중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한 규정의 준수 이상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의, 용기, 진실성 등 덕의 윤리에 충실할 때에 가능하며 회원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효과가 발생된다.

둘째, 덕의 윤리를 계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대학교 교육이 재검토되어 기업윤리 등의 교과과정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교육되어야 하며 회계감사 과목에서도 윤리문제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교과와 내용은 단순히 관련 조문을 나열하는 차원을 넘어 사례연구 혹은 모의실험 방법을 통하여 폭넓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덕 윤리 계발이 감사인의 자격요건과 공인회계사 제도의 유지에 필수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윤리에 관한 의사결정의 각 과정속에 내포되어 있는 윤리적 요인이 철저하게 분석되어야 하며, 기존의 직업윤리규정 뿐 아니라 덕 윤리에 기초한 각종 윤리 원칙들이 판단기준으로 필히 조명되어야 한다. 또한 덕의 윤리는 그 특성상 단시간내에 계발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윤리행동이 '습관화'될 정도까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공인회계사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윤리교육도 대학교육의 연장선에서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행 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윤리교육은 교육시간 및 그 내용에서 재검토가 요구된다. 교육시간도 대폭 증가되어야 할 뿐 아니라 기존의 강의식·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실제 상황에 충실한 사례를 개발하여 교육 참여자로 하여금 토론을 통한 규정 이외의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배양토록 해야 한다. 특히, 덕 윤리의 계발과 탁월성

〈표 7〉 윤리적 갈등과 해결방법

윤리행위에 관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단위: %)

윤리규정집 참고	5.1
회계법인 내부 위원회 조언	12.2
공인회계사회의 윤리위원회 조언	5.1
동료회계사와 협의	52.0
혼자서 해결	20.4
기 타	9.2

의 유지를 위해 철학, 종교, 심리, 문화 등 타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방안은 결코 한 두 회원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관련기관 전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윤리적 행동을 한 동료회계사를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표 7〉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인회계사들이 윤리적 갈등상황에 있을 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집단은 동료 공인회계사이다. 따라서 동료간 검토(peer review)제도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자체적으로 비윤리행동을 사전에 억제하므로 윤리적 행동을 위한 풍토조성에 공동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기능은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competence)과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intention)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능력과 의지는 단순히 규정만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고 덕을 겸비한 자에게서만이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공인회계사 업무의 시장이 개방되면서 높은 감사의 품질을 제공하는--기술적인 측면 뿐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서도

회계사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언제든지 부패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기관(institution)으로의 공인회계사제도는 practice로서의 타월성을 목표로 삼지 않는 한 항상 존속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Practice로서의 제반 회계업무를 인식하고, 덕의 윤리를 끊임없이 계발하며, 규칙의 윤리를 보완하는 것이 공인회계사제도가 계속 유지되며 발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며 결과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 참 고 문 헌

- 한국공인회계사 (1997), **공인회계사 직업윤리규정**, 한국공인회계사회
- 권태리 (1995), "직업윤리와 전문인,"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 W.S. 사하키안 (1986), **윤리학의 이론과 역사**, 송휘철·황경식 역, 서울, 박영사.
- A. 차머스 (1985), **현대의 과학철학**, 신일철·신중섭 역, 서울, 서광사.

- AICPA (1986), "Restructuring Professional Standards To Achieve Professional Excellence In An Changing Environment," AICPA.
- AICPA (1988),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AICPA.
- Arrington, C. E. and J. R. Francis (1989). "Letting The Chat Out of The Bag: Deconstruction, Privilege and Accounting Research,"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14, 1-28.
- Beauchamp, T. L. and N. E. Bowie (1988), *Ethical Theory and Business*,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road, C. D. (1951), *Five Types of Ethical Theory*, NY, The Humanities Press.
- Cavanagh, G. G., D. Moberg and M. Velasquez (1981), "The Ethics of Organizational Politic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63-374.
- Chow, C. W. (1982), "The Demand for External Auditing: Size, Debt and Ownership Influences," *The Accounting Review*, 272-291.
- Christensen, C. (1983), "The Methodology of Positive Accounting," *The Accounting Review*, 1-22.
- Davis, R. R. (1984), "Ethical Behavior Reexamined," *The CPA Journal*, 32-36.
- DeAngelo, L. E. (1981), "Auditor Independence, 'Low Balling' and Disclosure Regul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13-127.
- Francis, J. R. (1990), "After Virtue? Accounting as a Moral and Discursive Practice," *Accounting, Auditing and Accountability*, 5-17.
- Francis, J. R. (1984), "The Effect of Audit Firm Size on Audit Price: A Study of the Australian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33-151.
- Frankena, W. (1961), *Ethics*, NY, Prentice- Hall.
- Graber, D. E. (1979), "Ethics Enforcement-How Effective?" *The CPA Journal*, 11-17.
- Grasmick, H. G. and D. E. Green (1980), "Legal Punishment, Social Disapproval and Internalization as Inhibitors of Illegal Behavior,"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325-335.
- Hamilton, W. F. and W. D. Callahan (1988), "The Accountant As A Public Professional," in T. Beauchamp & N. Bowie (Eds.), *Ethical Theory and Busines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arsanyi, J. C. (1985), "Does Reason Tell Us What Moral Code to Follow and, Indeed, to Follow Any Moral Code at All?" *Ethics*, 42-55.
- Hwang, Ho-Chan and A. Schneider (1996), "A Study of Characteristics Related to Public Accountants' Professional Conduct," *Research in Accounting Regulation*, 10, 17-39.
- Jackson, B. R. and S. M. Jones (1985), "Salience of Tax Evasion Penalties Versus Detection Risk,"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7-17.
- Jackson, B. R. and V. C. Milliron (1986), "Tax Compliance Research: Finding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125-165.
- Knapp, M. C. (1985), "Audit Conflict: An Empirical Study of the Perceived Ability of Auditors to Resist Management Pressure," *The Accounting Review*, 202-211.
- MacIntyre, A. (1984), *After Virtue*, Notre Dame, Notre Dame University Press.
- McCann, D. and M. Brownsberger (1990), "Management as a Social Practice: Rethinking Business Ethics after MacIntyre," M. Stackhouse, D. McCann, S. Roels, and R. Williams (Eds.), *Moral Business*. Grand Rapid, W. Eerdmans.
- Solomon, R. C. (1993), *Ethics and Excellence: Cooperation and Integrity in Business*, Oxford University Press.
- Taylor, A. E. (1955), *Aristotle*, Dover Publication.

- Tittle, C. R. (1980), *Sanctions and Social Deviance: The Questions of Deterrence*, New York: Praeger.
- Trianosky, G. (1990), "What is Virtue Ethics All About?"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27, 335-344.
- Velasquez, M. G. (1988), *Business Ethics: Concepts and Case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Wyatt, A. R. (1989),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Professional Auditor," *Accounting Horizons*, 96-102.

# An Integration of 'Ethics of Rules' and 'Ethics of Virtues': A Study on the Enhancing Ethical Conduct of Professional Accountants

Ho-Chan Hwang\*

## Abstract

Professional accountants' ethical conduct has received much attention in recent years (e.g., Han-bo, Co.). Despite the importance of its issue, however, no effort has been made to study ethics of professional accountants in an integrated way. This paper reviews ethical theories and the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develop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KICPA). This paper emphasizes the cultivation of virtues (justice, courage, and truthfulness) to enhance members' ethical conduct. For this purpose, college teaching of accounting, or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 should be reorganized, so that more attention can be paid to the cultivation of accounting virtues. If this is not done soon, the public's confidence in professional accountants could seriously be impaired.

---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jong University